

이 문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의 문서입니다.
정식 문서는 보건소가 발행한 일본어 문서입니다.

②

호

_____보 제

년 월 일

_____ 보호자 님

_____보건소장

취업 제한 등 통지서

귀하의 자녀는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(이하 「법」 이라고 함) 제 6조에 규정된 결핵에 감염된 것이 판명되었습니다.
따라서 의료기관에 진찰을 받음과 동시에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감염증의 만연 방지를 위한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기

1 병증

- (1) 증상 _____
기침, 가래, 발열, 가슴의 통증, 호흡 곤란, 그 외 (), 없음
- (2) 진단 방법 _____
- (3) 초진 년 월 일 _____
- (4) 진단 년 월 일 _____

2 제한 내용

- (1) 귀하의 자녀는接客업, 그 외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업무는 불가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(2) 제한 기간은 그 병원체를 보유하지 않을 때까지 또는 그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.

3 그 외

- (1) 해당 감염증의 증상이 소실된 경우는 보건소로 연락 바랍니다.
- (2)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법 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5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(3)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 대해 그 대상자가 아닌 것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
- (4) 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 개월 이내에 도도부현 (都道府県) 지사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- (5)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는 상기 (4) 의 심사 청구 이외에 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 개월 이내에 도도부현 (都道府県) 을 피고로 (소송에서 도도부현 (都道府県) 을 대표하는 자는 도도부현 (都道府県) 지사입니다.) 、 이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(6) 상기 (4) 의 심사 청구를 하신 경우에는 그 심사 청구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 개월 이내에 도도부현 (都道府県) 을 피고로 이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답 당: _____